

보내는 사람

받는 사람

## 국세환급금 통지서

|      |  |            |  |
|------|--|------------|--|
| 일련번호 |  | 관리번호(우체국용) |  |
|------|--|------------|--|

|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환급금권리자 | 상호(법인명) |  | 환급관서<br>세무서장 |
|        | 성명(대표자) |  |              |
|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              |
|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|  |              |
|        | 주소(사업장) |  |              |

|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|  |
|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|--|
| 환급내용 | 환급사유  |  | 지급요구일        |  |
|      | 세목    |  | 지급요구번호       |  |
|      | 환급금   |  | 환급금<br>받는 방법 |  |
|      | 환급가산금 |  |              |  |
|      | 환급금계  |  |              | 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총당금액 |  |
|------|--|

- ※ 귀하(귀사)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에 총당(납부)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, 총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총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문의전화 : 환급금 결정내용, 환급계좌 신고 관련(☎ 부과담당자 번호)  
환급금 수령방법, 지급일 관련(☎ 환급담당자 번호)

### 안내 말씀

- 국세환급금은 귀하(귀사)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.
-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(PC, 모바일)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 
[홈택스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세무서류신청 → 환급계좌개설(변경)신고]
-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,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.

◎ 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6조

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
| <b>위임장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<b>영수증서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.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국세환급금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원정</span>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위<br>임<br>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<br>(법인명) | (서명 또는 인) | 주 민<br>(사업자)<br>등록번호 |  | 받<br>는<br>사<br>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| (서명 또는 인) | 주 민<br>등록번호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(전화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(전화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대<br>리<br>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| (서명 또는 인) | 주 민<br>등록번호          |  | ※ 계좌이체 가능하며(수수료 발생), 이 경우 별도 서식 작성이 필요합니다.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
| 우체국에서 수령 시 구비 서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| 본인 방문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리인 방문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인<br>(개인사업자 포함) | 1. 국세환급금통지서<br>2. 본인 신분증(원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국세환급금통지서, 2. 본인 신분증(원본)<br>3.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4.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인               | 1. 국세환급금통지서<br>2. 대표자 신분증(원본)<br>3.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| 1. 국세환급금통지서, 2. 사업자등록증<br>3. 대리인신분증(원본), 4.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<br>5. 법인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    |
| 임의<br>단체         | 1. 국세환급금통지서<br>2. 본인(대표자) 신분증(원본)<br>3. 고유번호증, 4. 임의단체확인서류(정관 등) | 1. 국세환급금통지서, 2. 대표자 신분증(원본)<br>3.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4. 위임장<br>5. 고유번호증, 6. 임의단체확인서류(정관 등) |

- ※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을 통해 확인되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가능합니다.
- ※ 수감자가 직접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, 대리인 신분증, 수용증명서, 위임장 지참 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.
- ※ 법인 또는 임의단체의 경우 1백만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을 타은행계좌로 이체하려면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(주주명부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정관, 회칙 등)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우체국예금 홈페이지([www.epostbank.go.kr](http://www.epostbank.go.kr)) - 고객센터 - 새소식 ‘국세환급금 고객확인 안내’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(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관련).
- ※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지급자 변경 등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